

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1. 16. 양순경의원 외 4인
 나. 회부일자 : 2007. 11. 16.
 다. 상정일자 : 2007. 11. 22.(제141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(제안설명자 : 양순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제천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부터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액이 제천시 재정능력과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의원의 의정활동실적과 물가인상 등 변동 요인에 따라 월정수당 적용 기준액을 월정수당 월 1,070천원을 월 2,400천원 상향조정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해당 규정의 근거로 의정비의 지급 기준액을 주민의 제천시 재정능력 및 의원 의정활동 실적과 소득수준 및 물가인상등을 감안하여 형평성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함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(안 제7조)
 ○ 제7조(월정수당 지급기준)

- 월정수당 월 1,070천원을 월 2,400천원으로 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상학)

- 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2008년도 의정활동비 인상은 상위법인

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제천
시장이 위촉한 민간인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한 제천시의회의원
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4차 회의개최 후 제천시 재정능력과 물가
상승률 및 2007년 의정활동실적 자료 검토와 시민의 의견을
수렴하여

- 2007년도 월정수당 1,070천원을 2008년도 2,400천원으로 제천시
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게 심의 인상 결정한 것임으로 지방자치법
및 동법시행령 과 적법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“ 없 음 ”

5. 소수 의견

“ 없 음 ”

6. 토론 요지

“ 없 음 ”

7. 심사 결과

“ 원안 가결 ”

8. 심사보고 불임서류

제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